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 수 원 지 방 법 원

## 제 2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6구합643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 |
| 피 고 | [redacted]도 [redacted]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12. |
| 판 결 선 고 | 2016. 11. 16.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8,046,800원, 농어촌특별세 2,902,340원, 지방교육세 5,804,680원 합계 66,753,82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가. 원고는 2012. 10. 29. 브레이징 관련 부품 제조 및 도매업, 자전거 프레임 제조 및 도매업, 비정질 금속 제품의 제조 및 도매업, 세라믹 및 비철금속과 관련된 제품의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 2. 5.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3. 29.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4. [redacted]시 B 공장용지 7,174㎡ 및 C 공장용지 400㎡(위 각 토지는 2015. 5. 14. B 공장용지 7,574㎡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1,451,1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58,046,800원, 농어촌특별세 2,902,340원, 지방교육세 5,804,680원 합계 66,753,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6. '원고는 2012. 11. 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한 시설, 기계, 기구, 특허권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와 사이에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원고가 소회 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은 시운전용 기계와 차량 2대, 특허권뿐이고, 원고로 이직한 직원도 대표이사 E와 이사 F뿐인 점, D는 위 사업양수도계약시까지 비정질포일제품[금속을 녹여 인위적으로 분자배열을 흩뜨려 놓은 후 진공상태에서 급랭시키는 과정을 거쳐 얇은 막의 형태로 제작되는 금속 제품으로, 브레이징 필러메탈(금속과 금속을 강하게 접합시키는 금속)의 용도로 개발되었다]의 개발에만 관여하였을 뿐, 해당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여 판매를 위한 제품은 생산하지 못하였고 관련 매출도 없었으며, 원고가 2014년경 비로소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비정질포일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D의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설령 원고가 D의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단서에서 정한 '사업의 분리'로서 창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는 1997. 5. 23. 무역업, 세라믹 및 흑연제품 제조 판매업, 기계류 및 기계부품 판매업, 비석면제품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0. 12. 22.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12. 22. 임기만료되었고, 2007. 1. 15.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1. 6.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D는 2007. 12. 5. '[redacted]시 H'에 [redacted]지점을 설치하였다가 2011. 9. 27. 위 지점을 폐지하고, 같은 날 종전 '[redacted]시 [redacted]구 I에 있는 J건물 101호'에서 위 '[redacted]시 H'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11. 10. 1. 위 '[redacted]시 [redacted]구 I에 있는 J건물 101호'에 [redacted]지점을 설치하였다가 2012. 11 .12. 위 지점을 폐지하고, 같은 날 종전 '[redacted]시 H'에서 '[redacted]시 [redacted]구 K'(위 '[redacted]시 [redacted]구 I'의 도로명 주소이다)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같은 날 2012. 11. 12. '[redacted]시 L'(위 '[redacted]시 H'의 도로명 주소이다)에 [redacted]지점을 설치하였다.

3) D가 제출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D의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무역, 비철금속, 흑연외', 업종코드는 '289102'[중분류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세분류명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단조, 단조방법에 의한 각종 금속 단조제품, 단조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보통강, 고탄소강, 합금강), 비철금속단조, 동단조물, 알루미늄단조물, 기타 비철금속단조제품']로 기재되어 있고, D의 공장등록증명서상 산업분류코드는 '23999'(소분류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세분류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로 되어 있으며, D의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총 제조비용은 2010년 11,336,950,058원, 2011년 13,020,745,435원, 2012년 8,859,705,938원이다.

4) 원고는 2012. 10. 29. [redacted] [redacted]구 M, 110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5. 5. 12. [redacted]시 N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5) 원고와 D는 2012. 11. 6.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내용 발췌)의 사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1조(목적)**
> 이 계약은 D와 원고 사이에 D가 소유 및 운영하는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거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양수도)**
> 1. D는 이 계약 체결일에 D가 소유 운영하는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브레이징 사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취득한 D의 사업용 자산으로서 법률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들이 별도 합의한 것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상법상 영업 양도의 방법으로 이전하기로 한다.
> 2. 이 건 거래를 통하여 D가 원고에게 양도할 양도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하여 D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기계, 기구[구체적인 품목은 별첨 2-1(진공멜트스피닝 장비, 진동분석기, 멜트스피닝 실험일지, 기술자료철, 멜트스피닝 노즐 및 부품 등 총 35개 항목 자산)과 같다]
> 2) 이 계약 체결일 현재 D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구체적인 특허권의 내역은 별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2-2-2('O' 외 7건)와 같다]

가) D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 중 P과 수행한 과제(과제명: P/M 공정에 의한 Active brazing sheet 재 제조 기술)를 통하여 취득한 브레이징 관련 "Q"에 관한 특허권(국내외 특허를 모두 포함한다.)

나) D가 현재 국내에 출원 중인 자전거 관련 특허권(이를 위하여 D는 이 계약 체결일에 위 특허 출원인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출원인 명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D의 보유 차량(리스 차량인 경우 리스계약의 양도를 포함한다)

가) 렉스턴 R 차량

나) BMW S 차량

4) 기타 위 각호의 하나에 포함되지 아니한 D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경제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계약관계, 고객관계, 경영 조직, 영업비결, 명성, 생산기술, 노하우, 판매량, 인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의 전부

3. D는 수행 중인 정부과제(과제명: 진공 멜트 스피닝 공정을 활용한 고활성 취성 합금의 광폭 박판 제조 기술 개발)의 승계가 불가능하므로 이 과제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과제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 D는 위 제2조 제2항 제2호의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인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이 계약 체결일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인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7. 원고는 이 계약 체결일에 D가 위 제1항 내지 제6항의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양도대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D에게 지급한다.

8. 위 제7항과 별도로 원고는 D에게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하여 D가 지출한 출원 및 등록 비용 27,748,000원과 정부과제(과제명: 진공 멜트 스피닝 공정을 활용한 고활성 취성 합금의 광폭 박판 제조 기술 개발) 수행에 지출된 43,955,462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고용승계)**

1. 원고는 D가 고용하고 있는 별첨3-1 직원 명단(E, F)의 인력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다.

6) 원고의 2012.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원고의 전체 유형자산의 순자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가액은 473,165,999원이고, 원고가 D로부터 인수한 기계장치의 가액은 445,000,000원으로, 위 가액이 유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05%이다.

7) 원고가 제출한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원고의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비정질금속제품외', 업종코드는 D와 동일한 '289102'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 1기부터는 업종코드가 '272300'[중분류명 '1차 금속 제조업', 세분류명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동관, 동중공봉, 구리, 동관연결구, 동시트, 동합금신선, 신동품, 동봉 및 형재, 동선, 동판, 동대, 동분 및 동편, 평각동선, 알루미늄압연 및 압출업, 알루미늄(봉, 선, 판, 띠, 박, 관, 중공봉)알루미늄분 및 편, 알루미늄샤시바, 기타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주로 동 및 알루미늄 이외의 비철금속재를 압연·압출·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형태의 비철금속 제품, 니켈(봉, 형강, 선, 관, 띠, 분, 편, 관 및 부착물), 연, 아연, 주석, 중석 등의 금속압연 및 압출제품']로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공장등록증명서상 산업분류코드는 당초 '24229'(소분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세분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였다가 2015. 10. 15.경 '24290'(소분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세분류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세세분류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

8)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5. 3. 20. D의 본점([redacted]시 [redacted]구 K)에 출장 방문하였을 당시, 위 본점은 사무실로만 운영되고 있었고, D의 직원은 '원고가 D의 비정질제품 생산부분을 사업양수하여 기계장치를 가지고 나감에 따라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본점([redacted] [redacted]구 M, 110호)을 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인한 결과, 원고는 D로부터 인수한 진공멜트스피닝 장비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비정질포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9)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5. 4. 6. D의 [redacted]지점([redacted]시 L)에 출장 방문하였을 당시, A동 건물은 D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고, B동 건물은 주식회사 T이 D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흑연, 세라 제조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위 창고에는 원고가 생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비정질포일제품이 쌓여 있었고, D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주식회사 T의 대표자는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원고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을 D가 예전부터 생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2항에서 그 의미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들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법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다)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4항("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법리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의 개념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의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D와 원고의 공부상 표시된 목적사업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D의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D로부터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진공멜트스피닝 장비 등 기계장치와 특허권 등을 인수하여 D가 수행하던 브레이징 사업 관련 기술개발을 그대로 계속하였던 점, ② 원고는 D의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된 주요 매출처였던 P과의 거래도 그대로 승계하여 종전의 방식[공동연구과제수행, Graphite(흑연 소재의 금속 원재료) 등 비철금속 공급]대로 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③ 당초 D의 화성지점은 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비정질포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를 인수하여 간 뒤로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던 점, ④ 조세특례제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D의 공장등록증명서상 산업분류코드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공장등록증명서상 분류코드는 공장설립 신고를 하는 사람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이용해 임의로 판단하여 기재해 넣는 것일 뿐인바, 위 규정의 취지는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등록증명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세분류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를 판단하라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한 점(부산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2021 판결 참조), ⑤ 원고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D와 동일한 업종코드를 적용하였던 점, ⑥ 원고가 D로부터 인수한 기계장치의 가액이 원고의 사업 개시 당시 총 유형자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규정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로부터 기계장치, 특허권 등을 인수하여 D가 종전에 수행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즉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 및 생산 등 브레이징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D는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여 관련 매출이 거의 없었다 하더라도, D는 위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총 1,227,048,322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한 바 있고, 원고는 사업 개시 이후부터 스스로 비정질포일제품 생산기술의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까지 D가 하던 기술개발을 그대로 계속하였으며, 기술개발을 완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본격적으로 비정질포일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관련 매출을 발생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바(제2차 변론기일 원고 대리인 진술 및 2016. 10. 6.자 준비서면 3면),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일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업을 D의 브레이징 사업과 실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거나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의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의 '창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김선영

판사 홍영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별지

## 관계법령

■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3. 29.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